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(1년) 운영 규정

[시행 2025.1.10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72호, 2025.1.10, 제정]



전남대학교 062-530-259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(1년)(이하 "학부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교육목표) 학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영역을 탐색하고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는 자기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.
- 제3조(학부의 장 등) 학부의 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
- **제4조**(교과이수) ① 학부 학생은 교양, 전공, 일반선택 교과목을 이수한다.② 학부 학생은 전공 탐색을 위하여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,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은 선택해서 이수한다.
- **제5조**(전공선택) ① 학부 학생은 1학년 수료 후 원하는 학과(부) 또는 전공을 선택한다. 다만, 각호의 학과(부)는 제외 한다.
 - 1. 보건의료계열, 사범계열, 예체능 계열: 간호대학, 사범대학,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약학대학, 예술대학, 치의학 전문대학원(학석사통합과정)의 각 학과
 - 2. 전공자율선택제 모수 제외 첨단학과: 공과대학의 전자컴퓨터공학부, AI융합대학의 인공지능학부 및 빅데이터 융합학과
 - 3. 직할학부: 자율전공학부(4년) ②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 학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부처장, 학사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조정부처장 5인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학부 운영의 기본 계획
 - 2. 학부 지침의 제·개정
 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운영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- 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, 교학규정 등 학사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2072호,2025.1.1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